

古尺에 對한 小考

(Korean Traditional Weights and Measures)

姜 奉 辰

Bong-Jin Kang

Korean traditional measures following the ancient Chinese system have originated from the Shilla Dynasty.

According to the records Korean Measures were systematized already at the Korea Dynasty.

At the time of the Lee Dynasty, the King Sejong had written down the system of weights and measures concretely in the book "Dae Jen Tong Pyen,"

According to "Dae Jen Tong Pyen" the Korean measuring system consisted of four kinds of measures.

They were the Joo, Yong-Jo, Yeki, and the Pobak measures. Joo was used to measure ground distance for surveying, Yong-Jo was used by the carpenter for building construction, Yeki was used to make the instruments of the ceremonies, and pobak was used to measure cloth and material.

After Korea-Japan Combine in 1910 the traditional system was not used and the Japanese measures system was put into effect.

At the beginning of the Lee Dynasty the traditional measuring system was at its highest peak. The end of Dynasty saw the system in disorder. In order to understand completely the difference in proportion between the Japanese and Korean systems, we must measure the historic building in detail and in that way discover the exact measure between traditional Korean and Japanese measures.

1. 序 言

무릇 度量衡의 三制는 人類文化發展과 함께 人間이 社會生活을 營爲하는데 있어 必要 不可缺한 것이므로 洋의 東西와 歷史의 古今을 莫論하고 各國마다 國法으로써 其 基本을 制定하고 國家에서 制定한 度量衡器를 使用케 하였으며 이를 違反한 者에 對하여는 國法으로써 罰을 課하여 社會生活上 去來의 公正을 期하였던 것이다.

元來 度量衡이란 말은 書經에서 나온 듯하다. 卽 書經 舜典에 「協時月, 正日, 同律度量衡, 律法制及丈尺解斤兩, 皆均同」이라 하였다.

또 度란 말은 物體의 大小長短과 厚薄細太, 土地의 廣狹深淺과 高低, 距離의 遠近 等의 程度를 測定하는 行爲를 말한 것이고 尺은 이러한 長이를 測定하는 器具를 말한 것이다.

古代 中國에서는 度量衡을 制定하는 基本原理를 黃鍾律이란 音律에서 求하였다고 한다. 黃鍾尺이란 이름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夏나라에서는 이 黃鍾尺의 十寸을 一尺으로 하였고 殷나라에서는 同尺의 九寸을 一尺으로 또 周時代에 와서는 同尺의 八寸을 一尺으로 하였다고 한다.

「度量衡皆起黃鍾律, 一黍爲分, 十分爲寸, 十寸爲尺, 蔡邕擇斷, 夏十寸爲尺, 殷九寸爲尺, 周八寸爲尺, 周禮地官, 置丈尺於絹布之市」라고 前漢律曆志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黃鍾尺을 制定하는데 기준(黑黍) 一粒의 長이를 一分으로 定하고 十粒의 長이를 一寸, 百粒의 長이를 一尺으로 定하였다 함은 오늘날의 十進法이 이미 古代中國의 度量衡制에서 始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度量衡制는 古代中國의 制度를 基本으로 하였음은 勿論이며 일찍이 新羅때부터 實施되었다고 하나 其 制度의 內容은 알 수 없고 高麗時代에 비로소 體系의 制度가 있었음을 文獻에서 볼 수 있다.

卽 高麗圖經에 「高麗爲國(中略) 取正中國, 度量權衡爲標의(中略) 陰以較中國之法, 無或少若毫髮之差者」云云이라 한 것을 보면 高麗는 當時 宋의 制度를 取하여 度量衡制를 實施하였음을 알 수 있다. 當時는 度制로서

布帛尺, 金尺(營造尺), 量地尺의 세가지 種類가 있었다(高麗史 卷84, 卷78參照). 이 高麗의 布帛尺은 日本에 傳해져서 所謂「高麗尺」이라 稱하였고 日本에서 가장 오래된 古尺이다.

高麗時代의 度量衡制度는 制定 初期에는 잘 施行되었으나 歲月의 흐름에 따라 高麗末期부터 李朝初期에 이르러서는 制度가 紊亂해져서 完全하게 施行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世宗代에 이르러 國法으로써 다시 紊亂해진 度量衡制度를 整備하였다.

그러나 李朝時代 亦是 初創期에는 어느 程度 施行되었으나 末期에 이르러서는 制度가 紊亂해져서 統一性이 없었다.

舊韓國時代에 이와같이 紊亂해진 制度를 바로 잡기 爲하여 度量衡法을 數次 改廢하였으나 完全하게 施行되지 못하였고 韓日合邦 以後에 비로소 日本式 制度에 依하여 施行되었던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國法으로써 metre法을 사용하고 있으나 一部에서는 아직까지 舊日本式制度의 「曲尺」을 사용하고 있다.

이 曲尺은 日本의 法律上的 基本尺이었다. 日本도 古來로부터 使用해오던 古尺이 여러가지가 있었고 各其 種類에 따라 一定치 못하였으므로 明治維新 以後 度量衡制度를 整備코자 從來에 使用해오던 曲尺과 享保尺을 折衷하여 만든 「折衷尺」에 古來부터 使用해온 曲尺이란 名稱을 붙여 基本尺으로 定하고 明治八年八月(西紀 1875年)부터 規則을 公布施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合邦 以後부터 從來 使用해오던 營造尺, 周尺, 布帛尺, 量地尺 등의 古尺使用을 廢棄하고 日本式制度를 使用하게 되었던 것인바 아직까지도 日本式的 「曲尺」을 사용하고 있음은 甚히 遺憾之事라 아니할 수 없다.

2. 古尺의 起源

古代中國의 度量衡制의 起源說에는 上記한 黃鍾律說을 비롯하며 黍法說, 人體說, 指說 등의 여러가지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高麗末부터 李朝初에 測地上에 指尺을 使用하였다고도하나 世宗代에 大典通編에 規定한 우리나라의 度制는 中國의 黃鍾律說에 依據한 것이다. 지금 上記한 各說의 概要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黃鍾律說……古代 中國에서 度量衡制를 制定하는데 音律에 依하여 尺度를 作成하였다고 한다. 이 音律이 卽 黃鍾律이다.

黃鍾律은 六律六呂의 基本이 되는 微妙한 音律로서

陽六을 律, 陰六을 呂라하여 音階를 十二律로 定한 첫째 소리인 陽律이다. 黃鍾律은 古代의 樂器인 鍾과 管 및 磬의 三者의 合奏에서 나오는 音律이다. 이 三者 合奏의 拍子가 맞는 곳은 一定不變하다. 이 黃鍾律의 一定不變한 곳을 이룬 길이를 가진 피리(笛) 卽 黃鍾律管의 길이는 恒常 一定하므로 이 길이로써 度制의 根源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黃鍾律管의 길이를 黃鍾尺이라 한다.

中國 黃帝 軒轅 때에 樂師인 伶倫이 大夏의 西嶽 嶰谿골에서 대를 求하여 黃鍾律管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黃鍾律管의 길이를 九十分하여 九十分之一을 一分으로 定하고 十分을 一尺, 十尺을 一丈, 十丈을 一引이라 하였다고도 하며 또는 黃鍾律管의 길이와 둘레는 가장(黍) 一粒을 一分으로 하여 길이 90粒(9寸), 둘레(圓周) 9粒(9分), 지름(圓徑) 3粒(3分)으로 定했다고도 한다.

「伶倫取嶰谿之竹, 制十二律籥, 以聽鳳鳴, 雄鳴六, 鶴鳴六, 以黃鍾管, 生六律六呂, 以候氣應 云云……十八史略三皇」

「黃帝使伶倫氏, 取竹爲黃鍾之律, 因律而作度 者大尺也……呂氏春秋」

黍法說…… 가장 一粒의 길이를 一分으로 定하고 十粒을 一寸, 百粒을 一尺으로 定했다고 하는 說이다 黃鍾律管의 길이를 가장 90粒으로하여 9寸으로 定했다는 說과 大同小異한 說이다. 何如間 古代 中國에서 度量衡制를 制定하는데 累黍法을 使用한 것만은 確實하다.

「衡數起於黍黑色圓黍一粒之重 十黍曰累, 十累曰銖, 六銖曰鎰, 四鎰爲兩 云云……類經」

人體說……度制를 人體로써 定했다는 說은 非單 中國에서 뿐만 아니라 일찌기 西洋에서도 그러하였다. 例를 들면 英國에서 1 mile 이라 함은 千步의 거리를 말한 것이라 하고 1 palm(손바닥)=3 inch, 1 hand(손)=4 inch, 1 span(拇指와 小指間)=9 inch, 1 cubic(팔꿈과 中指間)=18 inch, 1 pace(兩足を 벌린 거리)=5 feet 등과 같이 hand(손), foot(발) 등 人體로써 度制의 標準으로 삼았다는 說이다. 古代 中國에서도 일찌기 周나라 때부터 度制의 起源을 人體에서 取했다고 한다.

古語에 步以人足爲數란 말이 있고 側手爲府, 案指爲寸, 則度由之體生巧이란 말도 있다. 또 中婦人手長八寸 謂之咫, 周尺也란 말도 있다. 卽 周尺이란 人體에서 其 基本을 삼은 것이다. 古語에 依하면 周制는 分, 寸, 咫, 尋, 常, 仞의 諸度를 모두 人體에서 定했다고 한다 卽 八寸을 一咫(周尺, 中婦人의 手長), 4尺을 一仞, 二仞을 1尋(兩肱舒爲一尋, 倍仞爲尋, 8尺), 二尋을 一常(倍尋爲常, 一丈六尺, 16尺), 十丈을 一引(十丈曰引, 100尺)으로 定했다고 한다.

指說…… 손가락으로써 度制를 定했다는 說이다. 至

수도「자」가 없을 때 物品의 길이를 大略 測定하기 爲하여 拇指와 無名指를 펴서 5寸으로 計算하는 경우가 있음을 想起할 때 있을 法한 說로서 前記한 人體說과 五十步以笑百步한 것에 不過하다. 古語에 布指知寸, 布手知尺이란 말도 있다.

以上과 같이 古代 中國에서 度量衡制를 制定하는데 여러가지 說이 있고 이에 따른 度尺도 各種各樣이었다. 지금 中國의 古尺을 例記하면 다음과 같다. (數字는 曲尺換算值數임)

	尺
周尺(盛周時代十寸一尺).....	0.76
同 (周末六國時代八寸一尺).....	0.608
秦尺(周尺十寸一尺과 同).....	0.76
漢尺(秦尺과 同).....	0.76
漢官尺(後漢章帝時制).....	0.783332
魏尺.....	0.79572
晉前尺.....	0.76
晉後尺(東晉元帝以後).....	0.80712
前趙尺(劉曜渾天儀尺).....	0.798
宋尺.....	0.80864
梁法尺(音律尺).....	0.76532
梁表尺(測影尺).....	0.776796
後魏尺(前尺).....	0.91732
同 (後尺).....	0.97356
東魏尺.....	1.140608
地齊尺(東魏尺과 同).....	1.140608
後周市尺.....	0.961927
隋官尺.....	0.970368
隋水尺(音律用).....	0.90136
唐大尺(普通用).....	0.97
唐小尺(測影製冠用).....	0.80833
宋大尺(唐大尺과 同).....	0.97
宋小尺(唐小尺과 同).....	0.80833
南宋官尺(唐小尺과 同).....	0.80833
同淮尺(唐大尺과 同).....	0.97
金官尺.....	{1.164441 1.293824}
金營造尺(田畝, 家屋用)(南宋淮尺과 同).....	0.97
元官尺.....	{1.34 1.50}
元民尺(金營造尺과 同).....	0.97
明營造尺.....	1.06
同量地尺.....	1.085
同鈔尺(裁衣尺).....	1.13
清古尺(橫黍累百)(律尺).....	0.858
同今尺(縱黍累百)(營造尺).....	1.06
同量地尺.....	1.18636
同裁衣尺.....	1.168656

參考로 度尺 古制의 名稱을 들면 다음과 같다.

度…丈, 尺, 寸, 分, 釐, 毫, 絲, 忽, 微, 織, 沙, 塵, 埃, 渺, 漠,

이 度制에 있어 絲以下の 것은 肉眼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微小한 것이므로 有名而不可見이라 이름만 있지 實際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3. 우리나라 古尺의 沿革

文獻에 依하면 高麗時代의 古尺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한다.

金尺(營造尺).....周尺1尺2寸

量地尺.....周尺6尺

布帛尺.....曲尺1尺8寸

李朝에 이르러서 國初에는 國家에서 統制하지 않고 自然放置의 狀態에 있다가 世宗 때 비로소 度量衡整備事業에 着手하였다.

世宗七年 乙巳에 朴煥이란 사람은 中國의 古制에 依하여 秬黍律管(黃鍾律管, 黃鍾尺)을 制定할 것을 上奏한 바있고 許稠라는 사람은 朱子宗禮에 依한 宗廟神主의 모양을 陳理라는 사람집에서 發見하여 비로소 周尺의 長短을 알게 되어 이것에 依하여 度量衡制度를 制定하게 되었다고 한다.

當時制定한 制度는 世宗에 編纂한 經國大典과 六典條例에 詳細하게 記載되어 있다. 지금 其 內容一部를 拔萃해 보면 다음과 같다.

大典通編 原文에

諸司諸邑度量衡本曹制造

諸邑量則各送一件于諸道, 令觀察使依制平校烙印,

私處所造每歲秋分日, 京平市署外巨鎮平校並烙印,

度之制十釐爲分, 十分爲寸, 十寸爲尺, 十尺爲丈, 以周尺準黃鐘尺則周尺長六寸六厘, 以營造尺準黃鐘尺則長八寸九分九厘, 以造禮器尺準黃鐘尺則長八寸二分三厘, 以布帛尺準黃鐘尺則長一尺三寸四分八厘 云云 이라했고 또 六典條例에는

度用鑿尺. 純祖庚辰釐正周尺比舊尺少二分, 準黃鐘尺爲五寸九分五厘, 量田尺一尺準周尺四尺九寸九分九厘, 準布帛尺二尺二寸二分六厘, 比遵守尺加布帛尺一寸, 云云이라 하였다.

이와같이 世宗代에 이르러 度量衡制를 確立하고 全國에서 使用하는 度量衡器는 戶曹의 制에 따라 製作烙印하고 個人이 製作한 것은 每年 秋分日에 京城內는 平市署에서 城外는 地方廳에서 檢査烙印을 받도록 하였던 것이다.

尺度는 厘를 單位로 하여 十進法으로서 其 基本을 黃鐘尺과의 比例로써 定하였고, 距離는 一步=六周尺, 一

里=三百步(約 0.349km) 一息=三十里(約 10,472km)로 定하였다.

이렇게 制定한 制度가 制定 當時에는 比較的 잘 施行된 것 같으나 얼마 안가서부터 各地마다 使用하는 尺度가 不整不同하게 紊亂해지기 始作하여 李朝末期에 이르러서는 一定한 度量衡制가 거의 없다시피 紊亂의 極에 達하였다.

當時의 紊亂相의 一片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英祖二十九年 洪翼漢은 其 匕奏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各衙門斗斛各自不同, 軍門斗斛大於戶曹惠廳之斗斛」云云 卽 官廳에서 使用하는 「말」이 各各 다를뿐 아니라 軍隊에서 使用하는 「말」은 戶曹에서 製作한 「말」보다 컸었다고 한다. 또 丁若鏞은 徑世遺表서

「度量衡之無法, 有未深於我東, 一城之內市市不同, 一邑之內村村不同, 一村之內家家不同, 一家之內其所以收發者不同, 其流之害不可勝言」云云 卽 城 안에서는 市場마다 各各 다르고, 邑內에서는 마을마다 다르고 마을 內에서는 집집마다 다르고 一家內에서는 반아더는 데 使用하는 것과 나가는 데 使用하는 것이 各各 달랐다고하며 憲宗때의 崔星玉은 顯問備略에서

「今我國之量尺衡 所在不同, 邑異而家殊, 至有一家之內, 並用, 大小三四等異樣」云云 이런 것들을 볼때 其 紊亂之相을 可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므로 舊韓國時代에 이르러서 이와 같이 紊亂해진 制度를 바로잡기 爲하여 官制를 整備하고 數次 規則을 制定하였으나 完全히 實施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드디어 隆熙三年(西紀1909年) 九月에 度量衡法을 改正公布하여 全國에 施行하게 되었으나 이미 日本의 影響을 받은 때이었으므로 制定된 度量衡의 名稱과 命位는 在來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고 其 基本이나 原器에 이르기까지 日本의 度量衡法과 同一한 日本의 尺貫法에 依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現行의 所謂 「曲尺」은 日本이 西紀 1875年에 制定한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1909년부터 오늘날까지 使用하고 있는 셈이다.

4. 우리나라 古尺과 曲尺과의 比率

舊韓國末까지 우리나라에서 通用된 古尺에 對한 種類와 用途 및 日本式 曲尺과의 比率는 다음과 같다.

黃鐘尺……尺의 原器로서 遵守尺(基準尺)이라고도 하며 戶曹에서 保管했던 것이다. 所謂 中國의 黃鐘律管에서 본 단 것으로서 日本曲尺으로 換算하면 1尺1寸2分에 該當한다.

周尺……古代中國의 周時代의 度制를 본 단 것으로

田地의 丈量里數를 測量하는데 使用하고 또 喪服 其他 儀式上에도 使用하였으며 中國에서 使用하던 것과는 勿論 誤差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使用하던 것도 여러가지로 變遷이 甚하여 一定치가 않다.

舊韓國末 戶曹에 保管된 度器는 曲尺으로 6寸8分이었으나 各地에 散在한 度器는 一定치 않아 最長 6寸4分 最長 6寸8分까지의 여러가지가 있었다.

예를 들면 訓練院射橋石標(現在無, 乙支路六街)數周尺은 曲尺으로 6寸5分5厘, 喪禮備要圖本周尺은 曲尺 6寸3分5厘, 宗禮圖本周尺은 曲尺 4寸5分, 水標橋所建水標石刻(現在無, 清溪川3街, 現物은 獎忠壇公園으로 移轉)周尺은 曲尺으로 6寸4分였다고 한다.

營造尺……一名 木尺이라고도 한다. 建築用으로서 木手가 使用한 尺器이다. 竹製, 木製, 鐵製의 세가지가 있었다.

戶曹保管度器에 대하여 換算한 것은 曲尺1尺에 該當하나 各地에 散在한 尺器는 長短이 一定치 않아 最長은 1尺 最長은 1尺3分이 되었다고 한다.

筆者가 光化門의 實測을 行하여 算出한 比例에 依하면 關門用尺은 營造尺1尺이 曲尺9寸6分2厘가 되고 門樓用尺은 9寸7分로 나타났었다.

布帛尺……木製 或은 竹製로서 織物을 재는 데 使用한 尺器이다. 戶曹保管度器는 曲尺1尺6寸1分이었고 各地散在通用尺에 있어서는 最長1尺7寸 最長2尺까지의 여러가지가 있었다.

量地尺(量田尺)……土地를 測量하는데 使用했던 尺器이다. 戶曹保管度器는 曲尺3尺3寸이었고 各地에 散在한 量地尺은 最長 3尺3寸 最長 3尺5寸까지 있었으며 五周尺으로서 一量地尺으로 삼았었다.

禮器尺……喪衣, 葬具, 祭器, 其他 冠婚用具를 製作하는데 使用한 尺器이었다. 戶曹에서 保管한 度器는 曲尺으로 9寸5厘이었다.

其他 以外에 比단을 재는 絹尺, 裁縫에 使用했던 針尺等 李朝時代에는 實로 多種多樣한 尺器가 있어 또 其 長短도 各各 同一하지 않았던 것이다.

5. 結 語

上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古尺은 時代와 用途, 使用處所 또는 所有者에 따라 各各 長短이 달라서 一定한 規準을 잡기란 大端히 困難하다.

그러므로 個個의 古構造物에 對한 細密한 實測을 土臺로 하여 比例를 算出하여 當時의 其 構造物에 對한 使用尺을 究明하는 수 밖에 없으며 上述한 曲尺과의 比率는 다만 大略의인 範圍를 參考로 삼을 수 있음에 不 過한 것이다. (筆者 本協會理事)